

2023 판례 · 기출증보판 테마 형법 정오표

1.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(대판 2022.6.23, 2017도3829 전원합의체;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,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.)을 반영한 정오표입니다.
2. () 안의 표기는 2022 전면개정판 테마 형법의 페이지입니다.

〈총론 I 권〉

p.178(p.153, 추록(p.32) 13번)

문제 13번 해설 ② 수정

② × :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⇌ 구체적 부합설(발생사실(A사망)인 A에 대한 살인죄))

p.219(p.188)

문제 12번 해설 ② 수정

② × : 교사의 착오 중 질적 초과 ⇌ 교사자에게는 강간죄에 대한 교사 책임이 없고, 단지 제31조 제2항에 의한 교사한 범죄(절도죄)의 예비·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절도죄의 예비·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별이 된다.

p.228(p.196)

문제 5번 해설 ② 수정

② ○ : 불능미수범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임.

〈총론 II 권〉

p.67(p.60)

문제 7번 해설 해설 ④ 수정

④ × : 사람을 약취·유인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(제295조의 2),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는 형법총칙상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.

p.211(p.185)

하단 판례 ④ 수정

④ 남편이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처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남편의 '주거의 사실상의 평온'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 2021.9.9, 2020도12630 전원합의체). 13. 9급 철도경찰

p.245(p.212, 추록(p.99) 10번)

문제 10번 해설 ④ 교체

④ × : ~ (3줄)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(사후적 경합범)이나 전단 경합범(동시적 경합범)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판결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(대판 2014.3.27, 2014도469).

p.302(p.264)

문제 13번 해설 ① 수정

① × : 선고유예 ⇨ 보호관찰 ○, 사회봉사명령 ×

〈각론 I 권〉

p.339 문제 12번 기출표기 수정

12. 법원행사 ⇨ 22. 법원행사

p.355(p.321)

문제 3번 해설 ① 교체, 정답 교체

① ○ : 횡령죄 ×(대판 2022.6.23, 2017도3829 전원합의체 ∵ 금전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)

정답 3. 정답 없음

p.362(p.329)

문제 15번 해설 ④ 교체, 정답 교체

④ ○ : 횡령죄 ×(대판 2022.6.23, 2017도3829 전원합의체 ∵ 금전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)

정답 15. ②④

p.372(p.336)

문제 3번 해설 ④ 교체

④ 대판 2015.2.26, 2014도15182

p.380(p.342)

문제 7번 지문 ② 교체, 정답 교체

② × : 횡령죄 ×(대판 2022.6.23, 2017도3829 전원합의체 ∵ 금전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)

정답 7. ③

〈각론 II 권〉

p.280(p.244)

문제 1번 해설 ② 수정

② × :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수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(대판 1977.3.8, 76도1982).